

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7 일
신청인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	
주차장	⑤ 위 치		⑥ 총 규 모	대, m ²
	⑦ 용도변경 사항	당 초		변 경
	⑧ 용도변경 사유			
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			
※ 첨부서류				수수료
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없 음

※ 작성 시 주의사항

-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.
 ⑦란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
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